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6년도)



구 미 시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6년도)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구미시에서는 모바일·디스플레이·전자의료기기 등 풍부한 ICT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 진출 지원시스템을 통한 글로벌 창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IOT융합기술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6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1) 대상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2) 대 표 : 남유진
- (3)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 (4) 출연예정액 : 금70,000천원

※ 1차년도('16. 6월 ~ '17. 2월) 소요예산 중 시비 대응자금

나. 주요 사업

(1) 사업명 : 스마트창작터 사업

(2) 사업기간 : 2016. 6월 ~ 2018. 12월(3년간)

(3) 사업위치 : 구미시 구미대로 350-27(금오테크노밸리 내)

(4) 총사업비 : 15.6억원 (국비 13.5, 시비 2.1)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비	연차별 투자 계획			비고
		'16년	'17년	'18년	
계	15.6	5.2	5.2	5.2	
국비	13.5	4.5	4.5	4.5	
시비	2.1	0.7	0.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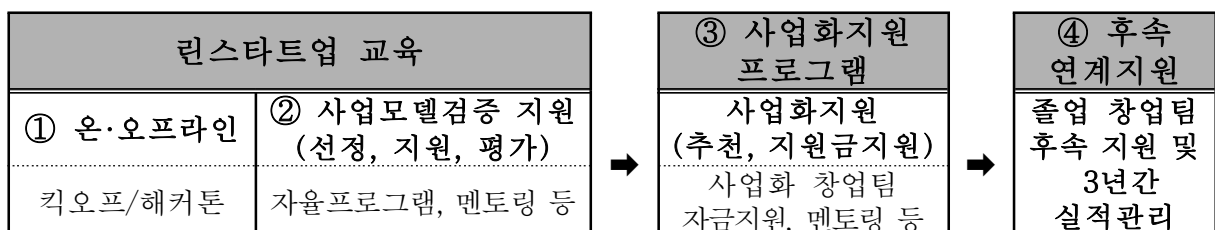
(5) 주관부처 :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6) 주관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7)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교육 및 사업모델검증 지원
- 창업팀 구성 및 사업화 지원
- 졸업 창업팀 후속연계지원

<스마트창작터 프로그램 구성개요>



※ 린스타트업(Lean startup) : 만들기 측정 학습(이후 계속반복)

-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요건제품(시제품)으로 제조한뒤, 시장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전략

(8)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6년(5.2억)	2017년(5.2억)	2018년(5.2억)
세 부 목 표	해외진출을 지향하는 글로벌 창업팀 육성	해외 진출관련 지원 (2건)	해외 진출관련 지원 (4건)	해외 진출관련 지원 (6건)
	지역전략산업/ 강점분야 연계형 ICT 융합 창업생태계 구축	사업화 도출 (5개팀 중 2개팀)	사업화 도출 (5개팀 중 3개팀)	사업화 도출 (5개팀 전원)
	창업자 지속적 이력관리 및 성과 확산	졸업팀 대상 추가지원 프로그램 준비	2016년도 졸업팀 대상 내외부 사업화 지원 (3건)	2017년도 졸업팀 대상 내외부 사업화 지원 (5건)
매년 사업수행내용		(1단계) 온오프라인 창업실습교육생 모집(200명내외) (2단계) 시장모델검증 25개팀 선정 및 지원 (3단계) 창업 5개팀내외 선정 및 사업화 지원		

(9)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14~'15년 : 1단계 스마트창작터 사업 수행

※ (주요성과) 2년연속 우수 수행기관 선정, 창업 9개사, 신규고용창출 14명,
해외진출 3개사 등

- '16. 4월 : 2016년 스마트창작터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
- '16. 5월 : 선정평가 및 신규 주관기관으로 선정

※ (기준) 30개 → (신규) 13개 선정

- '16. 7월 :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교육생 모집 공고

- '16. 7월 : (1차 모집교육생 대상) 킥오프 및 멘토링 워크숍 개최
- '16. 8월 : (1단계) 수료캠프 및 2단계 킥오프 개최
- '16. 9월 : (2단계) 멘토링 워크숍 및 수료캠프 개최
- '16. 10월 : (3단계) 진출팀 선정(전담기관) 및 사업화 수행

다. 출연의 필요성

- (1) 창조경제 시대 도래로 대량생산체제 기반의 고용 창출보다는 창업팀 육성이 새로운 고용창출 대안으로 부상
- (2) 모바일, 디스플레이, 전자의료기기 등 기보유 인프라를 활용·융합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강점 산업과 연계하여 창업 활성화
- (3)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통한 글로벌 창업지원체계 구축으로 강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지속적 진출기회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4)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추경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주요사업 실적

주요사업 실적

□ 총괄 추진실적(2014년~2015년)

- 창업팀 9개사 창업완료
- 교육 12회, 수료 281명
 - 교육지원

교육개설 수 (건)	교육시간 (시간)	수료생 수 (명)	앱 등록 (건)	세미나, 캠프등 개최 (회)
12	360	281	25	10

- 창업지원

총 창업팀 (팀)	신규창업팀 (팀)	멘토링지원 (건)	500만원 이상 매출(팀)	고용 (명)	지재권 출원 (건)	입상 (건)
9	5	77	4	14	8	1

□ 세부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비고
2014년(1차년도)	· 창업팀 4개사 창업완료 · 교육 5회, 수료 123명	
2015년(2차년도)	· 창업팀 5개사 창업완료 · 교육 7회, 수료 158명	

□ 주요성과

- GERI, 2년 연속(2014~2015년) 전국 우수 수행기관 선정
- 매출 및 신규 고용창출(2014~2015년)
 - 574,220천원 매출(회계기준 2015년 기준) 및 14명 신규고용 창출

<주요 매출 증가기업>

기업명	매출액(천원)	비고
썸데이즈	(2014) 0 → (2015) 72,000	
VIRALPRESENT	(2014) 40,000 → (2015) 88,000	
씨에스앤티크	(2014) 250,000 → (2015) 400,000	

- 해외시장 진출
 - VIRALPRESENT(미국/인도법인 설립)
 - 이wai엘코리아(필리핀, 사업진출을 위한 현지기업과 MOU)
 - 썸데이즈(중국, 현지기업과 대리점 계약)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盜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재원의 조달)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소관 실 · 과		과
입 안 자	과 장	투자통상과
	담 당	권기열
	담 당 자	이지영 (480-6143)